

11.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한국남부발전(이하 “당사”라 한다)이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하고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제출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3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서류를 접수하거나 교환을 할 수 없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호)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제3-1호)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다만, 『제1항의 시스템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과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중

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4호 참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확인된 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완요구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후 심사서류 제출일 이전에 발생 또는 신고·수정된 자료도 평가에 포함한다.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 1. 17)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으로서 물품구매 입찰 또는 제조업체로 한정 하는 물품제조 입찰 : [별표 1], [별표 1-1], [별표 1-2], [별표 1-3], [별표 2-1] (개정 2011. 1. 17)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제 1호 이외의 입찰 또는 고시금액 미만 제조 입찰을 적격심사로 실시하는 경우 : [별표 2], [별표 1-3], [별표 2-2] (개정 2011. 1. 17)

② 물품의 특성·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 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5조 (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 한국외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는 원화를 적용한다.

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6조 (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1]에 의한다.

가.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의 범위,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사업양수도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별표 1-2]에 의한다. 합병·분할·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1호 “다”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1-3]에 의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1], [별표 3-2]에 의한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은 당해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심사분야별로 합계한 총배점한도 (+6~-6)를 초과할 수 없다.

2.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하여야 한다(단,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신인도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감점한다).

3. [별표3-1] “나.품질보증”B, B-1 항목을 제외한 기타 항목은 국내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 등에서 발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1. 1. 17)

제7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제6조에 의한다(다만, 면허보완을 위한 전기·정보통신공사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당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당해 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 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이 확정된 계약이행 업체는 부도·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당해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다.

제8조 (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파산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 특수계약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특수계약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 받을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상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 중 부도·파산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제출한 비율로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은 잔여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③ 결격사유 사고유발자의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평가일 현재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관련부서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한다.

제9조 (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 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적격심사 면제 등) 삭제 (2011.12.30.)

제11조 (재심사)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재심사 요청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2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3)

③ 정당한 사유없이 7일 이내에 심사서류 전체 혹은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자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자격을 차순위에게 부여한다. (신설 2017.12.29.)

제13조 (기타사항) ① 이 심사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기준 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 공공구매 정보망(SMPP) 또는 전력그룹사 전자조달시스템(SRM) 및 당사 ERP시스템에서 조회·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사유로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2.10.31)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공포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물품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05. 9. 13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1.11.30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2.10.31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1. 11. 30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4.10.31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2. 10. 31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5.10.30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4. 10. 31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6.08.22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5. 10. 30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7.12.29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6.08.22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18.12.31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12.29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0.04.23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18.12.31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1.09.09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20.04.23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1. 이 세부기준은 2022.12.28 일 이후 공고되는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2. 당사 “물품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2021.09.09시행)”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개정 2010.01.17, 2017.12.29)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2. 기술능력	가. 기술인력 보유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다. 당사 인증기업	10	
	3.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II 입찰가격			55	평점산식 ([별표2-1] 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6~ -6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IV 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별표 2]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I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II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별표2-2] 참조)
III 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 도	가. 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나. 품질보증 다. 환경관리 라. 사후관리(A/S) 마.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6~ -6	
	2. 계약이행 성실도	가. 납품지연 나. 불공정하도급거래 다. 부정당업자 제재		
IV결격사유	1.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또는 파산상태로 당해 계약이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I.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별표 1-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구 분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 중소기업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3.0	A. 100% 이상	3.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B. 60% 이상- 100% 미만	2.0
	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0	C. 30% 이상 - 60% 미만	1.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5% 이상 - 30% 미만	0.5
중기업 또는 대기업	가.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5.0	A. 100% 이상	5.0
		수 량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B. 70% 이상 100% 미만	4.0
	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금 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 /추정가격]	1.5	C. 50% 이상 - 70% 미만	3.0
		수 량 [납품수량/입찰수량]		D. 20% 이상 - 50% 미만	2.0
				E. 5% 이상 - 20% 미만	1.0
					1.5
					1.25
					1.0
					0.75
					0.5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동등이상 물품의 당사 구매규격의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당해 입찰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유사물품의 당사 구매규격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당해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

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별지 제3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 (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당해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기본점수에 “가”,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공공구매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증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2. 창업초기중소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소기업·소상공인, 창업초기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1-2] 기술능력(배점한도 10점) (개정 2015.10.30, 2017.12.29)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	평점
가. 기술인력 보유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5.0	A. 기술사 또는 기능장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C.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 ② 2인 ③ 1인 D. 미보유	3.0 2.75 2.50 2.0 1.75 1.50 1.75 1.50 1.25 3.0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공장등록 연수 평가	4.0	A. 3년 이상 B. 2년 이상 3년 미만 C. 1년 이상 2년 미만 D. 1년 미만	4.0 3.5 3.0 2.5
다. 당사 인증업체	당사 인증업체	1	A.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B. 성과공유제 달성 기업	1 1

※ [주]

① “가”심사항목 기술인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이하 “기술사 등”이라 함)에 대해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는 기술사 등(동 자격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한 자격증사본과 당 자격자 최근 6개월 이상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21조에 의거 우리나라와 해당국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국가간 상호인정된 기술·기능분야의 자격증빙서류를 제출시에는 해당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밖에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 제출시에는 C등급(기능사)으로 평가한다.

② “나” 심사항목의 공장등록 연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당해 입찰대상 업종(산업분류표중 소분류)의 공장등록일자를 기준으로 기산하

되 공장등록은 연속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전으로 인하여 단절된 기간이 있더라도 단절된 기간 중 폐업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것으로 본다.

2. 국내 소재 제조자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원에 의하며, 국외소재 제조자의 경우 소재국의 유관사업당국이나 관할 행정관서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에 의하며 당해 입찰 대상업종에 대한 공장등록일자 확인이 불가능 할 때에는 해당품목의 당사 유자격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제3호에서 정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계약목적물의 업종에 대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된 기간을 평가한다.

3. 적격심사대상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포함) 등 증명서류 제출시 평가등급에 따른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증명자료와 당해 입찰공고일 이후 촬영한 공장 내·외부 정면·측면 사진 각 2매(4×6크기, 총 4매)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초기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며 기본점수에 A,B,C,D 등급의 해당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창업초기중소기업확인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술능력 평가는 “가”, “나”, “다”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그 중 평점이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2. “가”항 심사의 경우 기술인력 미보유업체는 D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인력 보유업체는 D등급과 해당되는 A, B, C등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④ “다”항 A. 혁신형 전력벤처기업, B. 성과공유제 달성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되 A. 혁신형 전력벤처기업은 인증일로부터 B.과공유제

달성기업은 성과확정일로부터 2년간 평가한다. 다만, 인증이 중복될 경우 1개만 평가한다.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인증여부와 관계 없이 입찰참가업체 모두에게 1점을 부여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개정 2017.12.29.)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①	평 점 ②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0	30.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0	29.5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0	29.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0	28.8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0	28.0

※ [주]

-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의 입찰은 평점①을 동조 제2호의 입찰은 평점②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사 지정정보장치』 또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고 조회 결과로 심사할 수 있다.
-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다만, 유효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 ③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개정 2023.12.27.>
이 경우 창업초기중소기업확인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⑤ 평가등급상 +, 0, -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0 등급으로 평가한다.
ex) A→A0, BBB→BBB0, BB→BB0

II. 입찰가격

[별표 2-1] 입찰가격(배점한도 5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55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circ \text{ 평점(점)} = 55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2-2]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circ \text{ 평점(점)} = 70 - 2 \times \left| \left(\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6점 ~ -6점) <모든 입찰 공통>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개정 2016.10.31, 2017.12.29, 2018.12.31, 2020.04.23, 2021.09.09., 2022.12.27., 2023.12.27.)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기술 및 디자인 인증보유	기술 및 디자인 인증	3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전력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GS(국산 우수 S/W)마크 보유자	2
			B. 특허등록, GD인증 보유자	2
			C.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보유자	1
나.품질보증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	3	A. 싱글PPM 인증 보유자	1
			B.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 인증서 보유자, KS제품인증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1
			C. "간"자마크, Q마크, K마크 인증을 받은 자,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자	0.5
다.환경관리	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3	A. GR, 환경표지의 인증(E마크) 보유자	1.5
			B. 환경친화기업 지정자	1.0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보유자	1.5
			D.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1.5
			E.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제품	1.5
			F. 녹색기술, 녹색사업 인증서 보유자	1.5
			G.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보유자	1.5
라.사후관리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A. (삭제)	(삭제)
마.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3	A. 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0
			- 여성고용 우수기업	
			· 여성고용율이 10%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2.0
· 여성고용율이 5%이상이고 여성종업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0			
-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0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마.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3	B. 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장애인고용율이 3%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장애인고용율이 15%이상이고 장애인종업원이 3인 이상인 기업	2.0 2.0 1.0
			C.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인원이 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인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신규 고용인원이 2.5%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인원이 3인 이상인 기업	3.0 2.0
			D. 공동수급체 구성 - 소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0.5 0.5
			E.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 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혁신형이면서 제조기업 · 혁신형기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우수그린비즈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2.0 1.5 1.5 1.0
			F.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G. 지식경제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5
			H.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은 기업	1.0
			I.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J.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마. 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지원 등		K.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0.5
			L.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추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	0.25
			M.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스마트공장 수준(Level) 1~2 등급 - 스마트공장 수준(Level) 3 등급 - 스마트공장 수준(Level) 4~5 등급	1.0 2.0 3.0
			N. 재기기업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창업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기업	3.0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1.0
			P.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Q.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1.0
			R.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월드 클래스 300 기업'	1.0
			S.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혁신 도시 (부산광역시) 지역기업	1.0
			T.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 15조에 따른 '뿌리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2.0

[별표3-2] 계약이행성실도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평 점
가. 납품지연	지체일수	-2	A. 최근 6개월 이내에 당사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 - 지체상금부과율 10% 이상 - 지체상금부과율 8% 이상 ~ 10% 미만 - 지체상금부과율 6% 이상 ~ 8% 미만 - 지체상금부과율 4% 이상 ~ 6% 미만 - 지체상금부과율 2% 이상 ~ 4% 미만 - 지체상금부과율 2% 미만	-2.0 -1.75 -1.5 -1 -0.5 -0.25
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하도급 위반정도 및 불공정거래행위정도	-2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범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다. 입찰담합 및 부정당제재	부정당제재 기간	-2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총 배점한도		-6	(가 + 나 +다) ≤ -6점	

※ [주]

- ① 국제입찰의 경우로서 외국업체가 1군데 이상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 3-1]의 “나(품질보증)”항의 “B”등급 및 [별표 3-2]항만을 적용한다.
- ② [별표 3-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평가는 다음과 각 호에 따른다.
 1. “가(기술 및 디자인인증 보유), 나(품질보증), 다(환경관리), 라(사후관리)”항의 각 인증서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

은 자(권리취득자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제1호의 심사항목의 동일 심사항목 내의 동일 등급 해당 인증서를 2개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중 평점이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의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 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4. GD 등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생략) <생략 2023.12.27.>

③ [별표 3-1] “가”항의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1.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2. 통상실시권자
3. '99.7.1~'06.9.30. 출원하여 기술평가<등록유지결정>를 받지 않은 실용신안등록

④ [별표 3-1] “나”(품질보증)항의 “B” 등급의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국가기관(위임받은 기관 포함)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⑤ [별표 3-1] “마”(기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지원 등) 심사항목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각 등급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A 및 B”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

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서 나온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 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2. “C”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 증빙서류, 국민건강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 포함)에 의해 평가한다.

나. 당해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6월,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6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3월	4월	5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 인

3. “A”(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신규채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4. “A”(여성고용), “B”(장애인고용), “C”(신규채용)의 평가가 중복되는 경우(동일 인물이 복수의 해당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가지만 인정한다.

가. “A”(여성기업지원 및 여성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B”(장애인기업지원 및 장애인고용촉진)“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5. “D”(공동수급체 구성)의 경우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소기업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중소기업청이 확인하는 소기업 관련 증빙자료 제출)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또한 지역업체는 납품 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D”의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공동수급체 구성가점』 적용을 제외한다.

6. 제5호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인도 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7. “E”(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0.04.23)

나.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4.23)

다. “E(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평가는 등급내 각 항목이 중복된 경우에는 평

가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 한 가지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0.04.23)

8. “L”항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당사와 체결한 물품제조계약과 관련하여 최근 6개월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 평가한다. 이 경우 해당계약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과 하수급자의 입금통장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통합거래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9. 심사항목 각 등급에 명기된 주무부처의 장(처,청)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10. “M”의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받은 경우에 평가한다. (신설 2020.04.23)
11. “N”의 재기기업 신인도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재창업자금, 재창업 R&D,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04.23)
12. “O”항의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적용한다. 다만, '18. 11. 1 이후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0.04.23.)
13. “S”항의 혁신도시 지역기업 신인도 가점은 본사 발주분만 적용한다. (신설 2021.09.09.)
14. “T”항의 ‘뿌리기업’은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전문기업’은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정증으로 확인한다. (신설 2022.12.27)

⑥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항의 납품지연에 따른 평가

가.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또는 단가계약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 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나”심사항목의 불공정거래에 따른 평가

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상습범위반 사업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선정된 자

3. “다”심사항목의 ‘A’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적용례) 입찰공고일이 '12년 10월 9일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9년 11월20일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11년 5월 20일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⑦ [별표 3-2] 계약이행성실도의 평가자료는 당사 ERP 시스템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6항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재된 자료 및 관련부서에서 통보한 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신청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건명	
입찰일시	0000.00.00 00:00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한 후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세부기준 제11조에 의거 처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규정 등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 1부

한국남부발전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물품 공통)

※ 심사대상자는 굵은 선안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시	
품명	
규격	
수량	
입찰금액	
추정가격	

2. 심사대상입찰자

업체명	
대표자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전화번호) -
Fax번호) -

4. 종합평가 (개정 2017.12.29)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이행실적	5		
기술능력	1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55		
신인도	+6~-6		
결격사유	-30		

구분	배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경영상태	30		
입찰가격	70		
신인도	+6~-6		
결격사유	-30		

※ (주)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및 제2-2호)

[별지 제2-1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1호)

종합평점	()점
------	------

평가대상업종	
--------	--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점 (개정 2018.12.31)

1. 납품실적 : ()점

가. 최근 7년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실적(a)	추정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부가가치세 제외)

납품실적(a)	추정가격(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또는

납품실적(a)	추정수량(b)	계산 : (a/b)x100	등급	평점

2. 기술능력 : ()점

가. 기술인력 보유

당해업체 기술인력 보유내역	등급내용	등급	평점

나. 생산기술 축적정도

당해업체 공장등록 (사업자등록) 일자	등급내용	등급	평점

3. 경영상태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II.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55-2x \mid (88/100-a/b)x100 \mid$	평점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당사에서 작성한다.

III.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2-2호]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제4조 제1항 제2호)

종합평점 ()점

평가대상업종

I.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 ()점

1. 경영상태 : ()점

가. 신용평가등급 : (“등급표시”)

II. 입찰가격 : ()점

입찰가격(a)	예정가격(b)	계산 : $70-2x \mid (88/100-a/b)x100 \mid$	평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단,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는 당사에서 작성한다.

III. 신인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급내용	평점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남부발전				
	용 도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 조 (), 공 급 (), 기 타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명 및 규격	단 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 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증 명 원 발 급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담당부서 :				담당자 :				

※ 【주】

-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란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4호]

제출서류목록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별지 제2호] 참조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별지 제3호] 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 - - " -	
납품실적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납품받은 기관 또는 당사	
기술능력	4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공장(사업자)등록증명원 등	관계기관 등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신인도	6	기술 및 디자인 인증 보유	관계기관 등	
	7	품질보증	관계기관 등	
	8	환경관리	환경부 등	
	9	사후관리(A/S)	심사대상자, 관계기관	
	10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연번 4, 6, 7, 8, 9, 10의 증명 또는 등록증 등은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대표자가 확인·날인하여야 한다.